

**제2650호**  
**2019. 4. 24.**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
 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 
 전화: 3396-4955  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# 구 보

● 고 시

- 제2019-43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..... 2
- 제2019-44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..... 3

● 공 고

- 제2019-323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..... 4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 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43호

**도로명주소 부여고시**

우리 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24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신당동 372-7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38-7	2019.04.24.	다산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충무로1가 24-1 7 외 3필지	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8나길 11	2019.04.24.	명동8나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명동길을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신당동 432-217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가길 25-4	2019.04.24.	동호로15가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신당동 432-366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다길 2-3	2019.04.24.	동호로17다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[www.junggu.seoul.kr](http://www.junggu.seoul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44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 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24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연번	도로명주소	지번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가길 25-4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-217	2019.04.24.	건물철거
2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38-7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2-71	2019.04.24.	건물철거
3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다길 2-3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-366	2019.04.24.	건물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[www.junggu.seoul.kr](http://www.junggu.seoul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323호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4월 24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1. 폐지사유

- 상위 자치법규인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」전면 개정(2010.12.29.)시「동 시행규칙」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(지원계획, 적용범위, 지원대상, 지원신청, 사업시행,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)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사실상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」폐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택국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여관동), 문의전화: 3396-5713, FAX: 3396-9087, 메일: mik.y0529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. 끝.

[붙임]

##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